

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의안 번호	11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·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예비비 예산액 1,855억 9,900만원 중 1,101억 9,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,081억 9,800만원을 지출하고, 미집행액은 19억 9,900만원임.

가.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 1,569억 4,400만원
- 지출결정액 975억 3,700만원
- 지출액 955억 5,700만원
- 이월액 0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9억 8,000만원이며,

그 사용내역은 DMC랜드마크 빌딩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 688억 9,300만원 등 47건임.

나.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	68억 8,900만원
- 지출결정액	51억 2,200만원
- 지출액	51억 2,000만원
- 이월액	0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	200만원이며,

그 사용내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(금호제15구역)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49억 3,900만원등 2건임.

다.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	217억 6,600만원
- 지출결정액	75억 3,800만원
- 지출액	75억 2,100만원
- 이월액	0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	1,700만원이며,

그 사용내역은 강서구 마곡 공항로변의 환매대상 토지인 공항로 수림대의 환매사업 미참여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액 41억 1,000만원 등 9건임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29조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 제134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

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라.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
-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서울특별시 등"이라 한다)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1.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
 2.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 3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·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 4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
5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
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-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
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
64조에 따른다.

마.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-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시
장 등"이라 한다)이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같은법 시
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
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
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
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
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
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
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.
- 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
출함으로써 끝난다. 다만,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해당
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바.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
관한 조례 제3조

-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
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
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